

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9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2025. 11. 11.
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구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·홍보에 필요한 교육자료와 홍보물품 등의 제작 및 배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·홍보에 필요한 물품 등 제작·배부 관련 규정 신설(안 제26조제4항)
- 나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조, 제67조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사항없음
- 나. 규제사무심의: 해당사항없음
- 다.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없음(가족복지과-38996호, 2025. 9. 24.)
- 라. 입법예고: 2025. 9. 29. ~ 2025. 10. 20.(21일간) / 의견없음
- 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

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“노력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행하여야”를 “시행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각각 “노력해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각각 “노력해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협력하여야”를 “협력해야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포함하여야”를 “포함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고려하여야”를 “고려해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수립·시행하여야”를 “수립·시행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표하여야”를 “공표해야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점검하여야”를 “점검해야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(回避)하여야”를 “(回避)해야”로 한다.

제13조제4호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수립·시행하여야”를 “수립·시행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촉진하여야”를 “촉진해야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“노력해야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“노력해야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“노력해야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수립·시행하여야”를 “수립·시행해야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“노력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강구하여야”를 “강구해야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수립·시행하여야”를 “수립·시행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표하여야”를 “공표해야”로 한다.

제25조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“노력해야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전개하여야”를 “전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추진하여야”를 “추진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·교육·홍보 등 추진을 위해 물품 등을 제작·배부할 수 있다.

제28조제1항 중 “도모하여야”를 “도모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각각 “노력해야”로 한다.

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울산광	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-----

현행	개정안
<p>기후위기 대응대책에 협력해야 한다.</p> <p>② 사업자는 지역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<u>노력하여야</u> 한다.</p> <p>제5조(구민의 책무)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,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<u>협력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) ① (생략)</p>	<p>----- 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노력해야</u> ----- --.</p> <p>제5조(구민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협력</u> <u>해야</u> 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(이하 “감축목표”라 한다)를 설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하여야 하며, 친환경차의 보급에 <u>노력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21조(탄소흡수원 확대)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·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<u>수립·시행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22조(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)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·추진에 적극 <u>노력하여야</u> 한다.</p>	<p>-----</p> <p>-- <u>노력해야</u> 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조(탄소흡수원 확대) ① 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수립·시행해야</u> ----</p> <p>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(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) ① 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노력해야</u> ----</p> <p>-----.</p>
<p>②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·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<u>강구하여야</u> 한다.</p> <p>제23조(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(이하 “적응대책”이라</p>	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강구해야</u> ----.</p> <p>제23조(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·시행) ① 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운동을 적극 <u>전개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·홍보를 <u>추진하여야</u> 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----- <u>전개해야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추진해야</u> -----</p> <p>---</p> <p>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·교육·홍보 등 <u>추진을 위해 물품 등을 제작·배부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8조(국가 등과의 협력)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<u>도모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, 기술의</p>	<p>제28조(국가 등과의 협력) ① 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도모해야</u> -----</p> <p>---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<u>노력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,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,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<u>노력하여야</u> 한다.</p> <p>제29조(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·지정·운영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설립·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청장에게 <u>제출하여야</u>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----- <u>노력해</u> <u>야</u>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노력해야</u> -----.</p> <p>제29조(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·지정·운영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제출해야</u> ----- 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근거법규

□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,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7조(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·홍보)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·

소비·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(이하 “녹색생활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·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, 교육·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
③ 정부는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.

1.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

2. 승용·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

3.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

④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·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
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
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,
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3. 작성자

- 소 속: 환경위생과
- 직 급: 지방세무주사
- 성 명: 진선영
- 연락처: (052)290-3711